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11
----------	--------

제안연월일 : 2015년 12월 21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2018년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과 국민적 관심의 고조를 고려하여 대한민국 선수단이 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제10회 밴쿠버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휠체어 컬링이 유일하며, 현재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15개 시·도 컬링팀이 참가하나 서울시에서는 실업팀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유망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경기력 향상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동계장애인올림픽에서 전 세계 선수단이 참가하는 메인이벤트 종목에서 2018년 평창 장애인동계올림픽 서울소속 메달리스트 출현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함.

다만, 그동안 시 체육회 정기총회 등에서 종목별 대표자회의 시 지속적인 신규 팀 창단 요청이 있었으므로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수도 형평성에 맞게 증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경기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안 제3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 중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3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를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u>경기인은 총 190명(장애인경기종목의 경기인 2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u>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경기종목의 경기인 3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u>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u>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경기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u>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종목의 경기인 3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를 “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u>경기인은 총 190명(장애인경기종목의 경기인 20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u>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 ③ (생략)</p> <p>④ <u>경기인은 총 200명(장애인경기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u>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